

(國) (內) (事) (件)

實用新案登録無効

<大法院 第2部 判決>(1977.11.5.)

裁判長: 大法院 判事 주재황
關與判事: "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1. 事 件: 76辛 38 實用新案登録無効
2. 審判請求人(上告人): 김오준(서울 東大門區 昌信洞 1-65)
정정선(서울 東大門區 昌信洞 山 3-1)
홍승표(서울 城北區 上溪洞 161-137)
訴訟代理人: 박병문
3.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 김반석(全南 복포시 성동 84)
4. 原審決: 特許局 1976. 11. 18字, 1975抗告審判 第282號 審決
5. 主文: 上告를 모두棄却한다. 上告費用은 各 審判請求人들의 負擔
으로 한다.

6. 理由

審判請求人們의 訴訟代理人의 上告理由를 본다.

本件被審判請求人의 登錄考案 중
金型틀에 固定된 지지구에 上廣下
狹한 傾斜凹口를 만들고 그 형틀上
部에 劍刀를 升降押壓板에 着設하
여 뜨개 바늘의 코를 成形하여 뜨개
바늘을 大量生產하는 方法이 청구
인 주장과 같이 公知公用의 방법이
라고 볼 수 없다는趣旨의 判斷을
한 原審의 措處를 記錄와 對照하여
보면 위와 같은 판단을 首肯할 수 있
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방법이 공
지공용임을前提로한 論旨는 理由
없다 할것이고 또 본건 등록고안증
금형틀底面에 대한 論旨는 이유 없
다 할것이고 또 본건 등록고안증
금형틀저면에 스프링에 의하여 升
降作動케 조절봉을 裝置함으로써
그 작동으로 成形된 뜨개 바늘이 自
動離脱케 한 장치가 논지에서 말하
는 甲 3號證의 刀類押壓裝置와 同
一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조처
도 수긍될 수 있다 할 것이니 거기에
所論과 같은 採證法則의 違背가 있

다 할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違法한 證據
取捨 및 事實認定에 屬한 專權事項
을 非難함에 歸着되어 모두 이유없
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하고 상고소송비용은 敗訴者인
각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關
與法官의 일치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판결한다.

一参考一

審決: 1975年 抗告審判 第282
號 審判請求人(抗告審判請求人):
김오준, 정정선, 홍승표, 代理人
박병문, 被審判請求人(被抗告審判
請求人) 김반석

위當事者間의 1974年 審判 第412
號(등록 제7554호) 실용신안의 무효
심판의 審決不服 抗告審判請求條
件에 대하여 主文과 같이 심결한다.

主文: 本件 抗告審判의 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 심판 및 항고심판
비용은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審決: 1974年 審判第412號 審
判請求人 김오준, 정정선, 홍승표,

國內外審判事例

<24>

調査部

▼

▼

判例教室

代理人 박병문, 被審判請求人 김반석, 代理人 이훈
위 當事者間의 등록제7,554호 실

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사건에 대하여
主文과 같이 심결한다.

主文: 본건 심판청구인의 청구

는 성립할 수 없다. 심판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意匠의 類似 類否判斷

(日本 東京高法 1977年 4月 14日判決,

1970年(行) 第66號 審決取消訴訟事件)

1. 原告:X(意匠権者·無効審判被請求人)

2. 被告:Y(登録意匠無効審判請求人)

3. 主文

原告의 請求를 棄却한다.

訴訟費用은 원고의 負擔으로 한다.

4. 事件概要

X는 特許廳이 1970年 5月 29日 同廳 1965年審判 第8505號事件의 審決을 取消請求했다. 한편 Y는 主文과同一趣旨의 判決을 청구했다.

Y는 X의 意匠権(噴露器噴口)에 대해 無効審判請求를 요구하였으나 上記審決로서 X의 의장은 무효가 되었다. 그理由는

(1) 本件意匠은

A. 基本的形態를 두터운 譚頭가 까운 쪽에 垂直狀端部를 조금 위쪽으로 向하여

② 그 端面 위쪽으로 短內柱狀노을 突設하고

③ 本體尖端部 끝의 下面에 短圓筒狀을 突設하고

④ 그 中心部에 가느다란 圓筒狀吸込筒을 垂下시키고

⑤ 本體垂直狀端部의 內側下面에 「ノ」字狀해버를 垂下시키고

⑥ 그 基部에 斜狀피스턴軸을 設置하였으며

B. 各部의 表現樣態는 ① 本體에 대해 그것을 측면에서 보면 段違線에서 옆으로 区分된 山形突條部가 있고 正面에서 보면 아래쪽을 향하여 暫次幅廣狀으로 표시되어 노즐의 外周에서 平行凹凸條를 표시한 것이다.

(2) 이에 대해 登錄第245,763號의 意匠(以下 引用意匠이라 함)은

A. 基本的形態를

① 두터운 譚頭狀本體의 垂直狀端部를 조금 위쪽을 향해

② 그 단면 위쪽 끝에 短圓柱狀노즐을 돌설하고

③ 본체의 첨단부끝의 아래쪽에 단원통상캡을 돌설하고

④ 그 중심부의 가느다란 圓筒狀吹込筒을 수하시키고

⑤ 본체수직상단부의 內側下面에 「,」字狀해버를 수하시켜

⑥ 그 基部에 斜狀피스턴軸을 설치하였으며

B. 各部의 表現樣態는

① 본체에 대해 그것을 측면에서 보면 본체 하면에서 캡의 위쪽으로부터 아래쪽에 향하여 暫次膨出狀

으로 한 橢圓形狀膨出部를 본체와 一體로 설치하고

② 本體頂面部에 帶狀部를 설치하고

③ 노즐의 外周面에 縱으로 狹幅의 凹凸條를 표시하고

④ 해버의 上部附近에 突起를 설치한 것이다.

(3) 이로써 兩意匠을 比較하면 基本的形態가 類似하며 本件意匠은 引用意匠의 後日出願이므로 意匠法第9條1項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X는 上記審決에서 指摘한 要部認定에 대해 公知部分을 要部로 判斷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反論하여 本件訴訟에 이르렀다.

5. 判決要旨

一般的으로 의장의 類否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全體로 하여 考慮해야 하나 그 경우 의장을 보는者的 注意를 가장 끌기 쉬운 部分을 要部로서 把握하고 이를 觀察하여 一般需要者가 誤認混同하느냐의 觀點에서 그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이 일반에 널리 알려진 周知의 形狀이 包含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일반수요자의 注意를 끄는 일이 없으므로 妨害되지 않는다.

의장에 公知形狀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가 공지의 형상은 그것이 世上에 알려진 정도 여하에 따라 흔히 있는 주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직하다.

따라서 이 점이 考察되느냐를 판단해야 하며 X가 말하듯이 공지부분은 妨害가 되지 않는다고 速斷해서는 안된다. 審決이 認定한 引用意匠의 基本的形態와 나아가서는

본건 의장의 기본형태는 공자의 것이라 해도 일반에 혼히 있는 주지의 형상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X가 주장하듯이 이들 기본형태가 두 의장의 유통부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본건 의장과 인용 의장의 유통부를 고찰해 보건대 그 유통부는 심결에서 인정한대로 X의 주장은 採用할 수가 없다. X의 주장대로 본건 의장과 인용의장의 유통부는 어느 것이나 보는 자의 주의를 크게 끈다고 할 수 있고, 세부의 特徵을 強調한 것에 지나지 않아 채용의 값어치가 없다.

본건 의장과 인용 의장을 對比할 때 兩者의 유통부는 심결에서 인정되는 양자의 기본적 형태에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 유사하다고 인정되어 그 의장을 構成 差異는 보는 자의 주의를 끌만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양자

는 類似한 의장이라해도 無妨하다.

6. 解說

本判决은 美의 異同을 類否判斷의 決定手段으로 삼지 않고 의장의 構成要素中의 어느 形狀, 模樣, 色彩 등에 의해 組立된 外觀, 또는 형태 그 自體의 特性, 特徵의 이동으로서 유통판단의 基準으로 하였다.

또한 본판결에서 『보는 자』는 判例에서 보듯이 일반수요자이다.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함은 의장이 法에 의해 保護되는 存在根據가 되며 의장은 단순한 物品의 外觀美創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작은 물품의 商品性, 즉 商品의 競爭經濟속에서 他人의 類似物品이나 外觀美에 대하여 對比되는 競業的 要素를 無視할 수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教

示인듯 하다.

그러나 의장의 유사유무, 다시 말해서 유부판단은 의장의 外觀一般에서 받는 美感인 美的 印象이나 美的 効果 또는 趣味感, 審美感 같은 것을 美의 異同 類否判斷으로 삼는 立場과는多少 距離가 있다.

이 경우에는 미감이란 觀念的, 主觀的 그리고 抽象的이며 漠然한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法의 客觀的合理的인 性格에서 許容되지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 유사의 判定에 A의장은 明快, 簡潔하나 B의장은 均整, 重厚, 繁華하다는 것으로서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印象은 보는 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 객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11面에서 계속—

2. 目的 設定

연구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잘 선택된 有用한 기술적인 것을 달성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의 설정은 基幹頭腦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인것이며 일단 목적의 정해지면 全研究所의 心血을 기우려 時宜에 맞고 최대한 완벽하게 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목적은 그 달성을 위해 수많은 人力과 錢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관련된 모든 기술적 경영적 지식을 충동원하여 철저한 운영분석, 평가, 기술분석을 함으로써 완전하고 뚜렷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3. 責任과 權限의 委讓

이것은 一般組織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소에서도 또한 필수적이다. 주어진 責任에 相應하여 綜合의 으로 일을 할 수 있는 權限이 부여되어야 하며 上位者의 지나친 간섭은 部下의 이니셔티브를 弱化시키고 그가 수행하는 일의 質에 대한 責任感을 감소시킨다.結果에 대한 책임과 함께自身과 그의 팀의 時間을 최대한 效果의 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연구소에서 가장 重要視되어야 할 원칙의 하나이다.

4. 리더쉽의 強化

어떤 과제를 수행할 책임과 權限이 個人에게 委讓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責任感으로 因해 일반적으로 그의 확신과 決斷力이 단련되며 따라서 리더쉽이 개발되고 강화된다. 軍에서의 Task Force처럼 연구소에서도

복잡하게 전개되는 수많은 문제에 각각 대처 하여야 할 여러 初級技術者の 리더쉽에 의존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므로 연구소에서의 리더쉽은 강조되는 것이며 또한 초급지휘자들은 리더쉽을 강화하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不斷히挑戰해 오는 환경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5. 熱意

熱意는 研究所 運營上 대단히 중요한 成分이다. 구성원이 그들의 일과 목적과 日常의 細部事項에 까지 热意와 誠意를 느낄 때 研究生產性은 끝없이 향상되고, 연구결과의 질과 창의성은 권태감에 빠져 있는 高級研究員의 그것을 오히려 훨씬 능가하게 된다. 열의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에 대한 이니셔티브, 실패에 대한 책임감, 성공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인정에서 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雾圍氣氛에서 發生되는 것이다.

6. 能力의 傳播

적절한 책임과 권한의 위양은 열의를 초래하고 열의는 전 구성원간의 능력의 전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열의가 있을 때 일에 대한 慾慾과 더 배우려는 慾望과自己에게 要求되는 기술을 研究하려는 노력이 나타난다. 이상에서 말한 여섯가지의 사항들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모든 구성원의 自負心과 一體感과 參與意識이 연구소 내에 충만하게 되며 따라서 적은 인원과 경비로서도 物量面에서 월등히 큰 規模의 연구소보다도 훨씬 더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